

4. 금융투자협회 규정

- 가.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(조사분석자료 대상 금융투자상품에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· ETN 포함)
- 나.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(국민참여형 국민성장집합투자증권저축을 판매회사 변경대상 제외 펀드에 추가)
- 다. 외화증권매매거래계좌설정약관 (해외시장 레버리지 ETF · ETN 투자시 기본예탁금 납부 의무화)
- 라. 금융투자회사의 표준내부통제기준 (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· ETN에 대한 내부통제 기준 개정)

4. 금융투자협회 규정*

가.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(2026/5/22 개정 · 2026/5/27 시행)

1) 개정 이유

- 금융위원회가 국내 우량주 기초 단일종목 레버리지(±2배 이내) ETF · ETN 도입을 추진함에 따라, 금융투자분석사의 조사분석자료 공표 · 제공 관련해서도 개별 지분증권과 동일한 수준의 규제를 적용하기 위함
 - 대통령 업무보고 과제의 하나로 국내 ETF 시장의 경쟁력 강화와 건전한 성장을 위한 제도개선을 위해 국내-해외시장 ETF 간 비대칭 규제 해소를 위해 자본시장법 시행령(2026.4.28 시행) 등을 개정

2) 주요 내용

- 단일종목 레버리지(±2배 이내) ETF(단일종목상장지수펀드증권) · ETN(단일종목상장지수증권)을 조사분석자료 대상 금융투자상품에 포함(제2-25조)
 - (기존) 조사분석자료 대상에서 집합투자증권을 제외
 - (개정) 조사분석자료 대상에서 집합투자증권을 제외하되, 단일종목상장지수펀드증권을 포함
 - ‘조사분석자료’란 금융투자회사의 명의로 공표 또는 제3자에게 제공되는 것으로 특정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대한 주장이나 예측을 담고 있는 자료
- 조사분석자료 공표 · 제공 관련 조사분석 대상법인 제한 등에 추가(제2-29조)
 - (기존) M&A 중개 중인 대상법인의 주식 · 주식관련사채, 주식선물 · 주식옵션, 주식워런트증권에 대한 리포트 공표 · 제공 금지

* 해당 내용은 매월 1일에서부터 말일까지 개정된 금융투자협회 규정 및 금융투자협회에서 공지하는 개정이유를 바탕으로 작성됨

- (개정) 기존 + 단일종목상장지수펀드증권 · 단일종목상장지수증권에 대한 리포트 공표 · 제공 금지
- 금융투자분석사의 매매거래 제한에 추가(제2-31조 제2항)
 - (기존) 금융투자분석사는 담당 업종의 주식 · 주식관련사채, 신주인수권, 주식선물 · 주식옵션, 주식워런트증권 매매 금지
 - (개정) 기존 + 단일종목상장지수펀드증권 · 단일종목상장지수증권 매매 금지
- 동일 기초자산 상품에 대한 금융투자분석사의 매매거래 제한 명문화(제2-31조 제4항)
 - (기존) 금융투자분석사는 소속 회사에서 공표한 금투상품에 대해 매매거래 제한 적용
 - (개정) 금융투자분석사는 소속 회사에서 공표한 금투상품과 기초자산이 동일한 상품(주식 · 주식관련 사채, 신주인수권, 주식선물 · 주식옵션, 주식워런트증권, 단일종목상장지수펀드증권 · 단일종목상장지수증권)에 대해 매매거래 제한 적용
- 금융투자분석사 등의 재산적 이해관계 고지 대상에 추가(제2-32조)
 - (기존) 금융투자분석사 등이 조사분석 또는 투자권유 대상법인의 주식 · 주식관련 사채, 신주인수권, 주식매수선택권, 주식선물 · 주식옵션, 주식워런트증권 보유시 이해관계 고지
 - (개정) 기존 + 단일종목상장지수펀드증권 · 단일종목상장지수증권 보유시 이해관계 고지

나.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(2026/5/22 개정 · 시행)

1) 개정 이유

-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으로 세제혜택 대상 집합투자기구에 ‘국민참여형 국민성장집합투자증권저축’이 신설됨에 따라 해당 펀드를 판매회사 변경 제외 대상에 추가하기 위함
 -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8 신설로 ‘국민참여형 국민성장집합투자증권저축’ 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규정 마련
 - 상품성격, 세금문제 등으로 판매회사 이동제 적용이 부적합한 펀드는 판매회사 변경 대상에서 제외
 - 판매회사별 처리절차 및 시스템 상이, 과세기준 변경 등으로 인한 판매회사의 과세표준을 재계산해야하는 문제, 세금 관련 처리시스템 미비 등으로 판매회사 이동제 적용이 어려운 펀드들에 한함

2) 주요 내용

- 변경대상 제외 펀드(제40-1조)

- 조세특례제한법(제91조의28)에 따른 ‘국민참여형 국민성장집합투자증권저축’을 판매회사 ‘변경대상 제외 펀드’에 추가

다. 외화증권매매거래계좌설정약관 (2026/5/21 개정 · 2026/5/22 시행)

1) 개정 이유

- 금융위원회가 국내-해외상장 ETF 간 비대칭 규제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(2026.1.30.)함에 따라 해외상장 레버리지 ETF · ETN 투자시 기본 예탁금 의무화 제도를 신규 도입하기 위함
 - 국내상장 레버리지 ETF · ETN의 기본예탁금 의무화는 KRX규정에 따라 이미 도입(2020.5.)

2) 주요 내용

- 기본예탁금의 납부(제10조)
 - 개인투자자가 해외 상장 레버리지 ETF · ETN 투자 시, 협회 규정에 따른 기본예탁금을 납부하여야 함

라. 금융투자회사의 표준내부통제기준 (2026/5/14 개정 · 2026/5/27 시행)

1) 개정 이유

- 금융위원회가 국내 우량주 기초 단일종목 레버리지(±2배 이내) ETF · ETN 도입을 추진함에 따라, 금융투자회사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와 관련하여 개별 지분증권과 동일한 수준의 내부통제기준을 적용하기 위함

2) 주요 내용

- 단일종목 레버리지(±2배 이내) ETF · ETN을 법령상 규제(자기 명의 매매, 1사 1계좌를 사용, 분기별 매매명세 신고 등) 적용 상품에 추가(제75조)
 - (기존) 시행령 제64조 제2항 각호의 상품(지분증권등)에 적용
 - 상장 지분증권, 증권예탁증권, 주권 관련 사채권, 파생결합증권, 장내·외파생상품
 - (개정) 기존 + 단일종목상장지수펀드증권(지분증권등)에 적용
 - 신설 단일종목상장지수증권도 법령상 규제가 적용되나 시행령 제64조 제2항 제4호의 파생결합증권에 해당하여, 별도 개정 없이 제75조가 적용

- 표준내부통제기준 고유 규제(사전승인, 매매회전율, 투자한도 등) 적용 상품에 추가(제76조의2)
 - (기존) 시행령 제64조 제2항 제1호(상장 지분증권)에 적용
 - (개정) 기존 + 단일종목상장지수펀드증권 · 단일종목상장지수증권(상장지분증권등)에 적용

선임연구원 신경희(02-3771-0854, skh0828@kcmi.re.kr)